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시청

전문공보관 검사 이상돈

전화 031-880-4304

보도자료

2024. 4. 22. (월)

제목

허위 임금체불 신고 등으로 대지급금 2억 6,000만원 부정수급한 건설공사 시행사 임원 등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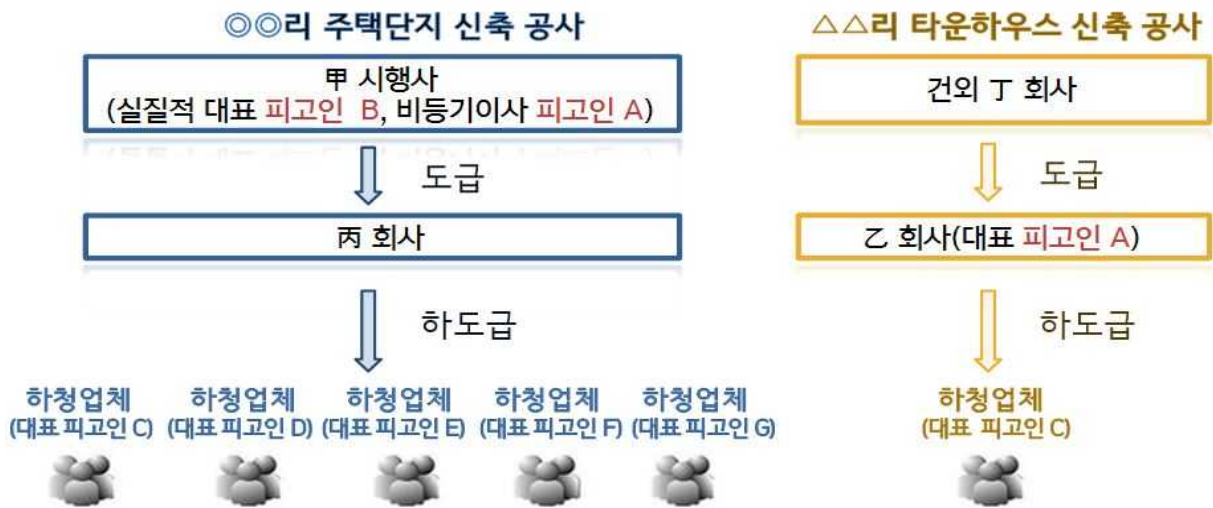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수원지검 여주시청(지청장 공봉숙)은,
 - 하청업체 대표 등과 공모하여 허위 근로자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마치 건설 시공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합계 2억 6,000만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에 대해 노동청과 협력 수사하여,
 - 범행을 주도한 시행사 임원 1명을 '24. 3. 15. 구속기소하고,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한 시행사 대표, 범행에 가담한 하청업체 대표, 명의를 대여한 허위근로자 등 27명을 '24. 4. 22.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 ※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 수사 결과, 주택단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비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시행사 대표 및 임원, 하청업체 대표 등이 공모하여 노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허위 근로자 또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4명을 건설 시공사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억 6,000만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 구속기소된 시행사 임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가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주거·가족관계 일정 등을 이유로 영장 기각-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대지급금이 실제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I 피고인

피고인	지위 / 역할	처분
A	甲시행사 이사 겸 乙회사 대표 / 범행 주도	구속 구공판
B	甲시행사 실질적 대표 / 배후에서 범행 지시	불구속 구공판
C, D, E, F, G	甲시행사 또는 乙회사의 하청업체 대표 / 허위 임금체불 신고 ※ D, E, F 3명은 허위 근로자로도 신고	
H 등 21명	허위 근로자 신고 / 신분증, 위임장 등 제공	구약식

< 피고인들 관계도 >



II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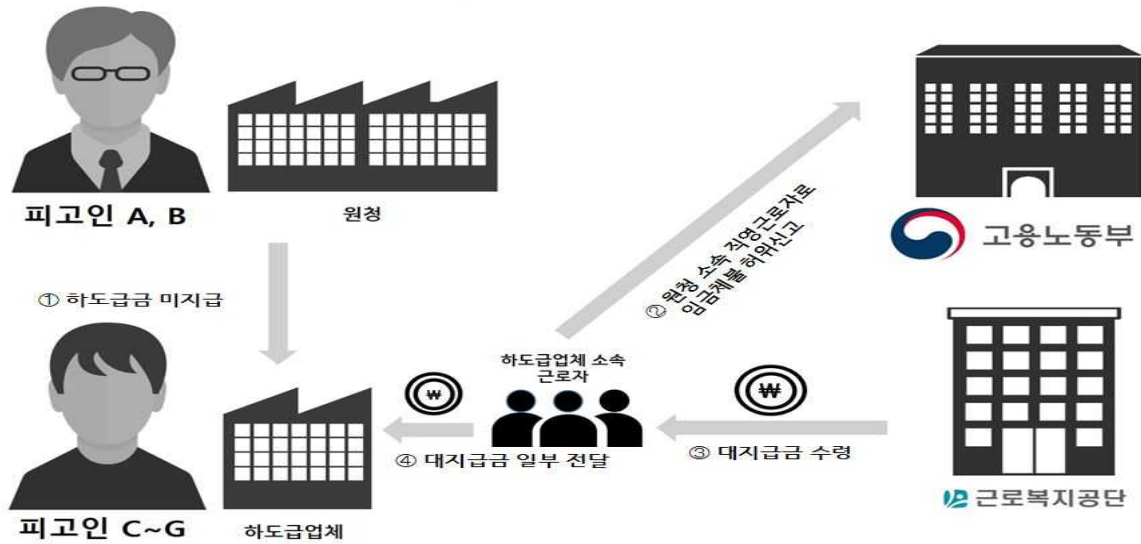
- '22. 1.~6.경 공모하여 양평 일대 주택단지·타운하우스 신축공사 관련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비 지급 독촉을 받아 공사와 무관한 허위 근로자 또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4명을 시공사인 乙 또는 丙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속여 허위 임금체불 신고하고 간이대지급금 약 2억 6,487만원 (B 2억 2,167만원, C 1억 2,159만원, D 5,375만원, E 3,340만원, F 1,154만원, G 4,054만원 각 부분 가담)을 부정수급하여 편취 [임금채권 보장법위반, 사기, 무고]

※ 피고인 A는 C로 하여금 '乙 회사' 대표인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신고하게 하여 무고 교사 혐의도 기소

나. 피고인 H 등 21명

- '22. 1.~6.경 A, B와 공모하여 허위의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간이 대지급금 부정수급 [임금채권보장법위반]

< 대지급금 부정수급 범행 구조 >



III 수사 경과

- '23. 5. 11. 성남노동청, 수사 착수
- '24. 2. 19. 성남노동청, A 구속
- '24. 2. 26. 성남노동청, A 구속 송치, C 등 46명 불구속 송치
- '24. 2.~3. 검찰, 보완수사 및 A의 무고·무고교사·사기 혐의 인지
- '24. 3. 14. 검찰, B의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사기, 무고 등 혐의 인지

▶ 시행사 대표 B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하였으나, 주거 일정 등 이유 판사 기각

- '24. 3. 15. 검찰, A 구속 기소
- '24. 4. 22. 검찰, B 등 27명 불구속 기소 (6명 구공판, 21명 구약식)

※ 허위 근로자로 송치되었으나 실제 하청업체에 노무를 제공한 17명은 임금을 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하여 기소유예, 소재불명 3명 기소중지

IV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

- **수사 초기부터 노동청과 적극 협력하여 대규모 부정수급 범행 엄단**
 - 신속한 수사지휘를 통해 노동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자 약 50명 소환조사, 약 43개 계좌거래내역 확보 등 면밀히 수사를 진행하여 거액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범 엄단
 - 주범 중 1명인 시행사 임원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 지휘 담당 주임검사가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고 구속전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 영장 발부를 이끌어 냄
-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배후인 실업주 인지 등 범행 전모 규명**
 - 사건 송치 후 검찰의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A가 소속된 시행사 대표인 B가 부정수급 범행을 적극 주도하면서 사전에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어 기소하는 등 범행 전모를 규명하였음
- **향후 계획**
 - 검찰은 앞으로도 대지급금이 실제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 하겠음 ☑